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임시중지명령 실효성 제고〉

■ 유영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34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유명하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5. 16.
- (3) 회 부 일 : 2025. 5.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해야 하는 등 발동요건이 엄격하여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집행 실적은 2건에 불과한 상황임. 또한, 요건을 만족하여 임시중지명령을 명한다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수준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일시중지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차별적 대응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법 위반 정도 및 소비자 피해 수준을 반영하여 조치의 수준도 다양화하여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법 위반이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로 완화하고, 임시중지 조치도 해당 행위 중지, 영업중지 등으로 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u>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u>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u>대하여</u>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① ----- ----- ----- <u>행위가</u> ----- ----- ----- <u>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u> ----- -- <u>일부의 일시 중지 등</u> ----- ---- <u>따른 조치(이하 “임시중지”라 한다)를</u> -----.
1. <u>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u>	1. <u>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2. <u>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u>	2. <u>해당 행위로 인하여</u> ----- ----- ----- ----- ----- -----

현행	개정안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② ----- <u>임시중지를 하기</u> ----- ----- ----- ----- ----- ----- ----- ----- ----- -----. ③ ----- ----- ----- ----- ----- ----- <u>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에 모두</u> ----- ----- ----- <u>일시중지</u>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① 법 위반행위¹⁾인 것이 명백하고, ②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③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을 규정하고 있음.²⁾

○ 임시중지명령제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정지 제도가 증거자료의 확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정식 시정조치 결정 전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되었고, 현재 현행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현행법상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의 활용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존재함. 2016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동 제도가 활용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함.³⁾

1)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어썸의 청약철회 방해 건(2017. 10.), 사크라스트라다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2022. 10.)

□ 이에 개정안은 ① 법 위반이 명백하게 판단되고, ②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발동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의 내용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발동요건과 유사함⁴⁾.

□ 또한, 현행법상 임시중지명령제도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중지만 가능하나, 개정안과 같이 다양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 법 위반 정도 및 소비자 피해 수준을 반영하여 차별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임시중지명령제도 요건 비교>

구분	현행법	개정안
발동 요건	<u>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할 것</u>	<u>법 위반*이 명백하게 판단될 것</u>
	<u>재산상 손해 발생</u>	-
	다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 +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	
조치 내용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전부 또는 일부 일시중지	해당행위 중지,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전부 또는 일부 일시 중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법 제21조제1항제1호)

두 건 모두 인터넷 쇼핑몰 접속차단 및 폐쇄 조치

4) 제8조(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행위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표시·광고 행위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2. 그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 의 처
02)6788-5114